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것에 맞추어 「근로복지기본법」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26호,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8. ~ 2023.01.07.)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63조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u>추정대차대조표</u> ,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① -----, <u>추정재무상태표</u> , -----.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u>대차대조표</u>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u>재무상태표</u> , -----.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생략)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u>재무상태표</u>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① -----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u>추정재무상태표</u> -----)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	-----)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연락처	(044) 202 - 7559